

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 시행 안내

헌혈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이고 국민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임에 따라 '2010.7.1일자로 헌혈 1회당 4시간의 자원봉사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.

- ◆ 시행일자 : 2010년 7월 1일부터 인정
 - ※2010년 7월 1일 이전 헌혈기록은 적용되지 않음
- ◆ 인정시간 : 헌혈의 종류에 상관없이 1회당 4시간 인정
- ◆ 인정기준 :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음
- ◆ 연간 인정 횟수 : 전혈5회, 성분헌혈 24회 이내
 - ※ 혈액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
- ◆ 인증기관 :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

◎ 자원봉사 인증기관 및 인증방법

- 인증기관 :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
- 인증신청자 범위 :
헌혈자본인, 인증관리요원, 헌혈단체 기관의 장(해당기관에 한함)
- 인증방법
 1.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에서 자원봉사인증서 발급
 2. 헌혈자가 직접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홈페이지(www.vms.or.kr)에 접속하여 자원봉사 인증서 발급
 - 발급순서 -
 - 해당 웹사이트접속(<http://www.vms.or.kr>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MY VMS클릭 → 조회 → 발급
- 기타사항
 - 문의사항 :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안전과(02-2023-7642/7643)